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4. 1.]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 3.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만다린, 두리안 및 파인애플 주스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대통령령 제3436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별표 7]

##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톤

[별표 8]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파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감귤은 제외하고,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수입전량
0810		그 밖의 과일(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60	두리안(durian)		5	수입전량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10	수입전량
2009	49	기타		10	